

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8. 2. 9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'98. 2. 16
- 다. 상정일자 : '98. 2. 16 (제6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자 : 사회복지과장 이남철

나. 개정사유

-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 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3조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“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”를 “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”로 개정
-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 경과조치 규정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허길중)

- 본 조례 개정은 노인 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,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6. 심사결과

" 원안가결 "

첨 부 :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동조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기금의 운용관리) ① 기금은 <u>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</u> <u>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의</u> <u>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(노인</u> <u>복지기금구좌)으로 관리한다.</u></p> <p>②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 <u>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</u> <u>운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. 국채,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3.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 <u>사업</u></p>	<p>제3조 (기금의운용 관리) ① (삭제)</p> <p>①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 <u>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(삭제) (삭제) (삭제)</p>